

관매도 여객선 위탁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

「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‘관매도 여객선 (선박명 미정)’ 위탁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5년 10월 27일

진도군수

1. 선박현황

가. 선 박 명 : 미정(관매도 직항 여객선)

나. 선박제원

- 180톤급 차도선 (L= 48.93m, B=10m, 13 ± 0.5노트)

- 승선인원 84명, 차량 12대

※ 승선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2. 운항횟수 및 항로

- 운항횟수 : 1일 3회(성수기 증편가능)

- 항 로 : 총 125km

· 진도항 ~ 관매도 ~진도항(2항차, 직항40km)

· 진도항 ~ 창유항 ~ 관매도 ~ 진도항(1항차, 경유 45km)

※ 운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운항노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- 선 적 항 :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부두

3. 위탁업무

- 가. 사업(운항)계획에 따른 여객선 운항 및 운영관리
- 나. 여객선 유지·보수 등 선박 관리
- 다. 운항에 필요한 시설(매표소 등)의 설치 및 운영관리

4.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

5. 위탁비용 : 908백만원 / (年평균) 303백만원 (예정금액, 유류비 별도 지급)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6년	2027년	2028년	총액	비고
① 선원 인건비	221,562	301,884	308,494	831,940	
② 선박수리비	79,659	83,243	86,989	249,891	
② 보험료	56,621	75,297	75,201	207,119	
② 선용품비	21,207	29,194	30,143	80,544	
② 안전관리비	15,529	21,324	21,960	58,813	
② 임시용선료	0	15,000	15,000	30,000	
② 전산매표시스템 수수료	6,478	6,663	6,853	19,994	
③ 일반관리비	24,063	31,956	32,678	88,697	
④ 이윤	42,512	56,456	57,732	156,700	
⑤ 계	467,631	621,017	635,050	1,723,698	
⑥ (순)수익금	206,969	295,305	313,582	815,856	
⑦ 예정가격	260,662	325,712	321,468	907,842	
⑧ 유류비(별도지급)	실 유류량 × 실 적용된 유류단가				

[주기]

- ① 선원 인건비 : 기본급, 수당, 복리후생비, 퇴직금 및 법정 보험료
- ② 선비 및 운항비 : 선박보험료 일체(여객공제, 선원공제, 선박공제, 선주배상책임공제), 선박수리비, 선박검사비, 선용품비, 운항관리비, 전산매표수수료, 회계심사비용, 안전관리비, 용선료, 카드수수료, 부두사용료, 전력비, 공과금, 교육훈련비
- ③ 일반관리비 : ①+②의 6% 이내
- ④ 이윤 : ①+②+③의 10% 이내
- ⑥ 여객 및 화물 수입 : 전산매표시스템 및 기타 증빙에 의한 수입금 증빙, 여객 및 화물 단가는 상호 협의에 의함
- ⑦ 위탁비용 : ⑤총 운항 원가와 ⑦위탁비용의 차이보다 ⑥여객 및 화물 수입이 초과할 경우 ⑦위탁비용은 정산 지급

※ 기초 금액 초과 수입금에 대하여는 상호 협약에 의해 균과 수익금 배분

6. 신청자격

- 가. 「해운법」에 의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
- 나. 「해운법」, 「해사안전법」 및 「선박직원법」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
 - ※ 선박직원은 당해선박 승선을 위한 모든 필수교육 이수자
- 다. 선박의 정박지 및 선석, 매표소 확보가 가능한 자
- 라. 진도군이 제시하는 위탁운영 조건에 동의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한 자

7. 신청제한

- 가. 사업신청서 마감일 현재 부도, 파산,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
- 나. 사업신청서 마감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자

8. 위탁조건

- 가. 위탁운영 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함)는 관계기관(목포지방해양수산청)으로부터 항로개설 신청, 사업 관련 면허 및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나. 위탁에 따른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제안서 제안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및 청구하여야 함(집행기준 및 방법 등 협약 시 결정)
- 다. 위탁 선박의 운항항로에 연료(휘발유, LPG 등 포함)에 대한 수송수요가 발생할 경우 또는 진도군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료를 수송할 수 있는 계획 및 그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
- 라. 관매도 여객선의 운항을 위한 유류비는 진도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유류 사용량 확인 및 면세유 공급을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서 구입 신청하여야 함

- 마. 선정된 사업자는 진도군과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
- 바.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「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및 위·수탁협약서에 의함
- 사. 사업자는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하며,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’ 제출 의무가 있음 ※ 협약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 가능
- 아. ‘수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’을 준수해야 하며, 계약체결 시 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’를 제출하여야 함

1. 수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2.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

- ① 공모 신청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해야 하며,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
- ② 다만, 수탁자(업체)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

9.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

가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5. 10. 27.(월) ~ 2025. 11. 10.(월) 18:00까지

나. 접수장소 : 진도군청 4층 해양항만과(해양정책팀)

※ 주 소 :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(☎ 061-540-6454)

다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(우편접수 불가)

라. 신청서류 : 수탁운영 신청서 등 (붙임 작성안내서 참조)

10. 수탁운영 사업자 선정 방법

- 가. 수탁운영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는 『진도군 관매도 여객선 민간위탁심사위원회』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에서 평가함
- 나. 사업자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한 점수(소수점 두 자리)로 산정함
- 다.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함
- 라. 신청자가 『사업계획서(제안서)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』의 총점(100점) 대비 60점 미만시 실격 처리함
- 마. 평가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후 협약 체결함이 원칙이며,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
- 바.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재공고하여 선정함

11. 수탁운영 사업자 심사 결과 발표 및 통보

- 가. 제안서 및 결과 발표일자 : 2025. 11월 중(별도 안내)
- 나. 통보방법 : 선정된 사업자 개별 통지
 - ※ 선정되지 않은 신청기관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
 - ※ 심사결과 평가점수는 미공개

12. 위·수탁 협약 체결

- 가. 일 자 :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(변동 가능)
- 나. 장 소 : 진도군청

13. 제출서류

- 가. 판매도 여객선 위탁운영 수탁신청서 1부(소정양식 공통)
- 나.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 해당) 각 1부
- 다.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- 라. 개인(법인)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(각서 포함) 1부(소정양식 공통)
- 마.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1부(소정양식 공통)
- 바. 협약서 1부(소정양식 공통) 및 청렴이행 서약서 1부
- 사. 수탁운영 사업계획서(제안서) 1식
- 아. 지원금제안서 1부
- 자. 해운업 관련 면허 및 기타 증빙자료 1식

※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평가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 응모자 중 최저점수로 평가

※ 소정양식 서식은 진도군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시고 제출 서류는 A4용지 규격으로 제본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10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9부)

14. 기타사항

- 가.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진도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향후 협약에서 추가 될 수 있으며, 제출한 제안서(사업계획서)의 내용은 진도군의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당해 항로의 현장을 방문하여, 사업 여건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판매도 여객선의 선적항은 진도항 내항임에 따라 선원은 진도군에 거주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실제 운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운항노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라. 공고사항은 진도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

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하며,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의 결정에 따릅니다.

- 마. 신청자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신청서류는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은 불가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실격 처리되며, 선정 후 사업신청 관련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중대한 오류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사. 신청 자료는 「사업계획서(제안서)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」에 따라 작성·제출하여야 하며, 평가 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아.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발생 되는 이견은 진도군 해석을 따릅니다.
- 자. 기타 세부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「사업계획서(제안서)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차. 신청서 중 소정 양식으로 요구하는 서식은 진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(www.jindo.go.kr 고시공고란)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시고,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해양항만과(☎061-540-645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사업계획서(제안서)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1부. 끝.